



영국



영국 집단소송제도

정보신청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시장감독과

I.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배경

1990년대 초반 영국의 전통적 민사소송제도는 비효율적이고 느린데다가 복잡한 규칙들로 가득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고, 근본적인 개혁이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보수당 정부는 울프경(Lord Woolf)에게 민사소송체계의 전면적인 개혁프로젝트를 맡겼고, 이에 울프경은 수년에 걸친 작업 끝에, 1996년 Access to Justice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의 제안은 새 노동부 정부에서도 계승되었고, 결국 기존의 최고법원규칙(Rules of the Supreme Court)과 지방법원규칙(County Court Rules)을 통합하여, 민사소송법(Civil Procedure Act 1997)과 민사소송규칙(Civil Procedure Rules 1998)이 잇달아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영국 민사소송제도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영국의 집단소송제도는 이러한 맥락에서 도입되었다. 집단소송은 동일한 사건 또는 관련 있는 사건들의 쟁점들을 함께 심리함으로써 소송 경계를 제고하고, 청구인의 소송청구를 편리하게 해주는 제도이다. 원래 1998년 민사소송규칙에는 집단소송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동안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어 온 집단소송을

규율하고 소송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하기 위하여, 2000년 민사소송규칙 개정에서는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되었다.

영국의 집단소송(Group Litigation)은 먼저 공통점이 있거나 서로 관련된 다수의 청구가 하나의 집단소송명부에 등재되어 단체소송으로(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직권으로) 제기되고, 그 중 하나가 시험소송으로 선택되어 심리를 받게 되며, 그 소송결과가 집단소송명부상의 다른 청구에도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고 요약할 수 있다. 영국 집단소송제도의 일반규정은 2000년 개정된 민사소송규칙(Civil Procedure (Amendment) Rules 2000) Part 19의 III. Group Litigation (Rule 19.10 ~ Rule 19.15) 항목에 담겨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실행지침(Practice Direction)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I. 집단소송제도의 주요 내용

1. 집단소송명령의 정의

집단소송명령(Group Litigation Order, GLO)

이란 민사소송규칙(2000) Part 19.11에 규정된 요건에 근거하여, 사실관계 측면에서 또는 법적 관점에서 공통점이 있거나 서로 관련성이 있는 쟁점(이른바 집단소송쟁점(the GLO issues))이 있는 사건들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이다(Part 19.10).

2. 요건

집단소송의 요건은 Part 19.11에 나열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집단소송쟁점'을 야기하는 여러 청구들이 제기되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 집단소송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집단소송명령에는 집단소송명령에 의해 처리되는 청구들을 모아 놓은 집단소송명부(the group register)의 작성에 관한 명령을 포함하여야 하며, 집단소송명령 하에서 처리될 집단 쟁점들이 무엇인지 정해야 하고, 집단소송명부의 청구를 처리할 집단소송관리법원(management court)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집단소송명령은 제기된 집단소송명령의 사건들과 관련하여, 집단소송관리법원으로 이송시키거나, 다른 명령이 있을 때까지 소송진행을 중지시키거나, 집단소송명부에 청구를 기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또한 정해진 기간으로부터 집단소송 사건의 재판이 집단소송관리법원에서 시작되도록 하거나 당사자들을 집단소송명부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집단소송명령을 공개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집단소송은 관련된 청구의 소가 제기되기 이전이나 후에도 모두 가능하고, 청구인들 또는 피고인들에 의해서도 신청가능하며(Practice Direction 3.1), 집단소송관리법원의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Practice Direction 4).

집단소송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건 변호사는, 집단소송 사건에 관련될 수 있는 다른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변호사회의 다수 당사자 정보 서비스를 조회해야 한다(Practice Direction 2.1). 또한 변호사 그룹을 만들어, 여러 변호사 중 한 명을 리더로 선정할 수 있다(Practice Direction 2.2). 또한 신청자는 집단소송 신청 전에 병합소송(the claims to be consolidated)이나 대표소송(representative parties, Section II of Part 19)이 더 적절하지 않은지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Practice Direction 2.3).

집단소송 신청양식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은 소송의 성격에 대한 요약, 이미 제기된 소송의 성격과 숫자, 포함될 수 있는 당사자의 숫자, 소송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또는 사실관계의 공통 쟁점(집단소송명령 쟁점), 청구인들의 더 큰 집단 내에서 더 작은 청구를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등이다(Practice Direction 3.2).

3. 집단소송명부(Group Register)

사건의 어느 당사자도 집단소송명부에 등재되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다(Practice Direction 6.2). 어떤 사건이 집단소송명부에 등재되도록 하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려면, 그 사건이 집단소송쟁점들 중 최소한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야 한다(Practice Direction 6.3). 만약 사건이 집단소송 쟁점들에 해당되더라도, 법원은 만약 해당 사건이 집단소송명부의 다른 사건과 함께 관리되기에 편리하지 않거나, 집단소송명부에 등재될 경우 다른 사건들의 관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해서, 어떤 사건의 세부사항이 집단소송명부에 등재되는 것을 거부하거나, 기존에 등재된 사건을 삭제할 수도 있다(Practice

Direction 6.4). 집단소송명부는 보통 법원에 의해서 보관되고 관리되지만, 법원은 집단소송명부에 등재된 사건 당사자의 변호사에게 보관·관리를 명할 수 있다(Practice Direction 6.4). 법원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에는 집단소송명부에 등재된 청구의 당사자는 법원에 관련문서를 요청할 수 있다(Practice Direction 6.6<1>). 만약 변호사에 의해 집단소송명부가 관리되면, 누구나 업무시간 중에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집단소송명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변호사는 법원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Practice Direction 6.6<2>).

집단소송명부에 기입된 청구의 당사자는 집단소송관리법원에 집단소송명부에서 삭제시켜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집단소송관리법원이 집단소송명부 삭제를 명하면, 장래의 청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지시할 수 있다 (Part 19.14).

4. 소송 절차

집단소송관리법원은 집단소송명령이 내려지면, 집단소송 관리에 대한 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이 지시는 나중에 집단소송명부에 등재되는 모든 청구를 일반적으로 구속한다(Practice Direction 12.1).

집단소송관리법원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할 수 있다(Part 19.13) : 1) 집단소송명령을 수정한다. 2) 집단소송명부상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청구가 시험소송(test claim)으로 진행되도록 한다. 3)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들의 변호사를 대표변호사(lead solicitor)로 지정한다. 4) 집단소송명부의 주장의 편입기준이 충족되었는지 보여주기 위해 사건의 진술에 포함된 세부사항

을 정할 수 있다. 5) 특정 날짜를 정해서, 법원의 허가가 없는 한, 그 날 이후로 더 이상 다른 청구가 집단소송명부에 추가 등재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등재마감시한(cut-off dates)의 경우, 교통 사고와 같은 긴급한 재난의 경우에는 등재를 조기에 마감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소비자소송이나 특정한 제약관련 소송의 경우에는 시한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Practice Direction 13). 또한 집단소송명부상의 집단소송 명령 사건들을 충족시키는 특정한 청구를 등재하기 위한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만약 집단소송명부상의 어떤 청구가 시험소송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청구가 화해가 된 경우에는 집단소송관리법원이 집단소송명부상의 다른 주장을 시험소송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Part 19.15 <1>). 이러한 명령이 내려지면, 대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시험소송에서 이루어진 모든 명령은 (법원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대체된 청구를 구속한다(Part 19.15).

집단소송관리법원은 집단소송의 청구자가 '단체청구상세서'(Group Particulars of Claim)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Practice Direction 14.1). 이는 그러한 세부사항이 수집되었을 시점을 기준으로 집단소송명부상의 모든 청구자들의 다양한 청구를 기재해야 한다.

5. 효력

집단소송의 효력은 Part 19.12에 규율되어 있다. 집단소송명부상의 한 청구에서, 하나 또는 복수의 집단소송 사건들과 관련하여 판결이나 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이 다른 명령을 하지 않는 한) 판결이나 명령은 판결·명령이 내려질 당시에 집단소송명부에 등재된 다른 모든 청구에 대

해 당사자를 구속한다. 법원은 선고 후 나중에 계속해서 집단소송명부에 들어온 청구에 대해서 당사자를 구속하는 범위에 대해서 지시할 수 있다.

자신을 구속하는 판결·명령이 내려진 후에 집단소송명부에 등재된 청구의 당사자는 판결·명령이 파기, 변형, 보류되도록 하는 판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또는 그 판결·명령에 항소할 수 없다. 그러나 구속받지 않는 판결·명령은 예외에 해당한다. 위의 경우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구속력 있는 판결·명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당사자는 그에 대한 항소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다른 명령을 하지 않는 한, 집단소송명부에 있는 청구에 대한 당사자에 의하여, 집단소송명령 사건들과 관련된 문서들이 발표된다는 의미는, 청구에 관한 모든 당사자들의 문서를 발표한다는 것이다. 이는 집단소송명부에 있거나 나중에 집단소송명부에 기재되게 될 모든 것을 포함한다.

III. 다른 나라의 집단소송과의 비교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은 어느 한 소송청구를 전제로 하며, 피해자의 개별적 수권 없이 피해자들의 손해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소송제도이며, 독일의 단체소송제도(Verband-

sklage)는 특정한 '단체'가 침해행위의 중단이나 위법행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이다.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이 피해자(들)이 피해의 구제를 직접 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독일의 단체소송은 공익단체가 피해의 확산을 막거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영국의 집단소송은 소송주체가 공익단체이고 피해확산-예방이 목적인 독일의 단체소송과는 상이하다. 반면 하나의 소송 결과가 유사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제도와는 상대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다. 하지만 그 효력은 단체소송명부에 등재된 청구에 한다는 점에서, 개별적 수권이 불필요한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과도 일정한 차이가 있다.

2005년부터 시행된 한국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경우에는 소송 대상이 증권관련 위법행위에 한정되어 있으며, 특별히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한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원에게 미친다. 하지만 영국의 집단소송은 증권관련 위법행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며, 단체소송명부의 등재된 자에게만 판결의 효력이 제한적으로 미친다는 점에서 한국의 '증권관련집단소송' 제도와는 구분된다.

홍 성 수

(영국 주재 외국법제조사원)